

제주지방법원 2019. 6. 7 선고 2019가단144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7. 10. 10. 접수 제2950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양태경

별지